

콩고민주공화국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DR콩고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산업적벌채) 산업적 목재 벌채허가 [환경·지속가능발전부] - (소규모벌채) 소규모 목재 벌채허가 [주정부]	벌채허가서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별채허가서]

REPUBLICUE DEMOCRATIQUE DU CONGO
MINISTRE DE L'ENVIRONNEMENT,
CONSERVATION DE LA NATURE ET TOURISME

N° []

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U BOIS D'OEUVRE N° [] Permit number

LE MINISTRE

Vu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
Vu la loi n° 011-2002 du 28 août 2002 portant Code Forestier, spécialement en ses articles 97 et 98 ;
Vu l'Ordonnance n° 12/004 du 28 Avril 2012 portant nomination des Vice-Premiers Ministres, des Ministres, d'un
Ministre Délégué et des Vice-Ministres ;
Vu l'Ordonnance n° 12/008 du 11 Juin 2012 fixant les attributions des Ministres, notamment en son article
13 :

Ministère N° 0011/CAB/MIN/ECNEF/2007 de l'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oeuvre et des autorisations d'achat, vente et exportation de bois d'oeuvre ;
Vu le rapport d'examen de la demande de coupe de bois introduite par l'Exploitant
Forestier [] Contrat N° [] ou G.A. N° []

DECIDE

Article 1er : Il est accordé à l'Exploitant Forestier dont le nom est surmonté de la présente 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u bois d'oeuvre pour la période allant du [] à []

Province [] District []
Territoire [] Secteur []
Superficie []

Area for harvesting (region, territory, plot, district, sector) []
Period of time []

Surface (1000 ha) []

Essence à Exploiter	Volume à prélever (m³)	Essence à Exploiter	Volume à prélever (m³)
1. CAZOU D'AFRIQUE			
2. SIPO			
3. SAPELLI			
4. TIARA			
5. KOSIPO			
6. IRUKO			
7. AFROROSIA			
8. TOLA			
9. DIBETOU			
10. BOSSE			
11. PAGOUK			
12. MUKULUNGU			
13. ALI			
14. BILINGA			
15. NIOVE			
TOTAL			[]

Volumes per species

Species

Article 2 : La présente autorisation de coupe industrielle du bois d'oeuvre entre en vigueur le jour de sa signature.

Fait à Kinshasa, le []

Original destiné à l'Exploitant

LE MINISTRE [] Signature and stamp by authority

콩고민주공화국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산림 현황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국가 소유로 개인이나 법인에 의한 사법 또는 공법상 산림의 벌채와 이용은 산림법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습니다.(산림법 제7조) 벌채허가가 부여된 토지에 포함된 천연림이나 조림지는 해당 벌채허가 보유자의 소유로 구분되며 산림법 규정에 따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합니다.(산림법 제8조 및 토지법규) 마을이나 그 주변에 있는 수목, 집단 소유 농지, 개별 농지에 위치하는 수목들은 마을 공동 소유거나 개인 소유로 구분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산림법 제9조). 지역공동체는 관습상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에서 보호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벌채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산림법 제22조), 지역공동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벌채허가를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산림법 제10조~제22조에 근거하여 기능에 따라 보존림, 보호림, 영구생산림으로 구분됩니다.

보존림

보존림은 국가 공유지로 분류되며, 산림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존림은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산림이 속하는 주정부의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합니다.

보존림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용권 및 벌채허가에 대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생태학적 측면에서 특별한 목적을 지니게 됩니다. 국가나 분권화된 단체에 속하는 재조림 구역은 보존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며 산림법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보존림은 기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보존림에는 다음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천연자연보전지역
- 국립공원 내 산림 / 동식물원 / 야생동물보호지역
- 사냥터 / 생물권보전지역 / 휴양림 / 수목원 / 도시림 / 보존지역

보존림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사지 침식 방지 / 샘과 하천의 보호 / 생물 다양성 보전 / 토양 보전
- 공중위생 생활환경 개선 / 인간환경 보호
- 기타 일반적으로 산림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목적

보호림

보호림은 국가에서 보존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 중에서 목표 조림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지정하는 산림과 농경지 개간 산림, 산업적 벌채나 소규모 벌채를 위해 인가되는 산림, 일상적 벌채허가가 부여된 지역공동체에 양도되는 산림을 포함합니다.

* 산림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은 전 국토 면적의 최소 15%를 산림으로 유지해야 함

영구생산림

영구생산림은 벌채지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을 포함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며, 국가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을 통해 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소유권을 벌채허가 보유자와 지역공동체에 양도합니다.

환경·지속가능발전부(Ministère de l'Environnement et Développement Durable)는 산림의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소속 전담 부서인 산림관리국(DGF: Direction de la Gestion Forestière), 자원조사·산림경영국(DIAF: Direction des Inventaires et Aménagements Forestiers), 자연보전국(DCN: Direction de la Conservation de la Nature), 감시·내부감사국(DCVI: Direction de Contrôle et Vérification Interne), 법무팀(CJ: Cellule Juridique)으로 업무이행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관리는 산림법 제24조~제32조에 근거하여 중앙, 주, 테리투아르(Territoire)¹⁾, 현지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

출처 :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총 152,578,000 ha 로 전체 국토면적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²⁾ 산림은 원시림(Primary), 기타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³⁾

- 원시림(Primary) : 102,686,000 ha(67.3%)
-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 49,832,000 ha(32.7%)
- 조림지(Planted) : 60,000 ha

1) 주에 속한 행정구역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12,300,000 ha⁴⁾
- 보존림 : 26,314,000 ha⁵⁾
- 보호림 : 24,297,000 ha⁶⁾

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림은 산림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 및 규제가 이루어지며 벌채 유형은 산업적 벌채와 소규모 벌채로 구분합니다. 산림법 제82조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산림법 제8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설립된 본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소재해야 하며 콩고민주공화국 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법 제87조~제90조, 제98조, 제100조, 제111조~제113조
- 일부 목재제품 수확의 규제에 관한 부령(2008.8.22.)제034/CAB/MIN/ECN-T/15/JB/08호
-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2016.10.29.)제084/CAB/MIN/ECN-DD/CJ/00/RBM/2016호
- 산림벌채계약 과업지시서의 표준 협정을 정하는 부령(2010.6.7.)제023/CAB/MIN/ECN-T/28/JEB/10호

2-1. 산업적 벌채허가

산업적 벌채허가는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084호(2016.10.29.) 제22조,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서 발급하며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환경·지속가능발전부와 산림벌채계약(CCF: Contrat de Concession Forestière)을 체결
- ②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벌채임시 관리계획(plan de gestion provisoire) 제출
- ③ 인접 지역공동체와 사회협약체결

* 산림법 제89조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일반조항 및 특별조항

- 1) 일반조항 : 목재의 벌채와 관련된 기술 조건

2)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4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6)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0,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특별조항

- 금융비용
- 벌채허가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 시설 관련 의무사항
-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경제 기반시설 설치 : 도로 건설 및 정비, 의료시설 및 학교 시설의 보수와 설비, 인적 물적 운송 편의

- ④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산림경영계획(plan d'aménagement), 5개년 관리계획(plan de gestion quinquennal), 연간사업실시계획(plan annuel d'opération) 제출
- ⑤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산업적 벌채허가(PCIBO: 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Oeuvre) 신청
- ⑥ 환경·지속가능발전부로부터 산업적 벌채허가서 발급 및 벌채 시행

2-2. 소규모 벌채허가

소규모 벌채허가는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084호(2016.10.29.)제22조,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여 주정부에서 발급하며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정부로부터 승인서(certificat d'agrément) 취득 및 소규모 벌채업자 인가 취득
- ② 주정부의 벌채 면적 확인
- ③ 주정부에 소규모 벌채허가(PCB: Permis de Coupe artisanale de Bois d'œuvre) 신청
- ④ 주정부로부터 소규모 벌채허가서 발급 및 벌채 시행

2-3. 그 외에 벌채허가

그 외에 비목재 임산물의 수확과 목탄생산을 위한 벌채허가는 목재 벌채의 조건과 원칙에 관한 부령084호(2016.10.29.) 제22조, 제25조, 제30조에 근거하여 비목재 임산물의 수확허가는 주 환경조정관 또는 지역환경 책임자가 발급하며 벌채허가는 주정부에서 발급합니다.

2-4. 수수료

벌채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림법 제102조~제125조, 공동 부령 제060호, 제095/2016호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벌채지별 연간 토지 사용료
- 벌채지별 연간 벌채구역에 대한 산업적 벌채허가세(taxe du permis de coupe industrielle de bois d'œuvre)
- 과업지시서의 사회 조항 관련 수수료
- 50 ha 이하의 면적에 대한 벌채 허가의 경우 연 2회 소규모 벌채허가세(taxe du Permis de Coupe artisanale de Bois)
- 서면 합의 또는 벌채 협약 취득세

2-5. 벌채금지 수종

콩고민주공화국은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수종의 벌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습니다.

- 산림법 제45조~제51조
- 보호 수종을 정하는 부령(2003.03.18.)제CAB/MIN/AF.F-ET/N°042/200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 규제(CITES)에 관한 명령(2000.3.28.)제 056/CAB/MIN/AFF-ECNPF/01-00호

[참고]

출처 :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제공 자료

REPUBLIQUE DEMOCRATIQUE DU CONGO

Ministère de l'Environnement, Conservation de la Nature et Tourisme

CONTRAT DE CONCESSION FORESTIERE N° [redacted] Number of concession contract

Issu de la conversion de la Garantie d'approvisionnement N° [redacted]
du [redacted] jugée convertible suivant la notification N° [redacted]

Le présent contrat de concession forestière est conclu entre :

d'une part,

Le Ministre de l'Environnement, Conservation de la Nature et Tourisme, agissant au nom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ci-après dénommé - l'autorité concédante - ;

et d'autre part,

[redacted] immatriculée au registre de commerce sous le numéro [redacted] représentée par [redacted]
[redacted], ayant son siège au [redacted], en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ci-après dénommée - le concessionnaire - ; Name of concessionaire

Article 1^{er} :
L'objet du présent contrat est de définir les droits et obligations des parties, il est complété par le cahier des charges ci-annexé.

Le cahier des charges comporte en annexe, un plan de gestion préparé par le concessionnaire et approuvé par l'administration et décrivant l'ensemble des investissements et des activités qui seront entreprises et réalisées par le concessionnaire pendant les quatre premières années du contrat de concession. Le cahier des charges fait partie intégrante du présent contrat de concession.

Article 2 :
Le présent contrat porte sur une concession forestière d'une superficie SIG de [redacted] hectares dont la situation géographique et les limites sont décrites ci-après : Surface (hectares)

Localisation administrative Administrative location

1. Secteur : [redacted]
2. Territoire : [redacted]
3. Districts : [redacted]
4. Province : [redacted]

B

그림 12. 콩고민주공화국 산림벌채계약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생산, 운송,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에 관한 명령 제804호에 근거하여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서 발급하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의 목재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서 책정하는 제세공과금과 사용료가 징수되며 수출 규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목재의 매입·매도, 수출의 허가가 제한됩니다.

* 환경·지속가능발전부의 주도로 징수해야 하는 제세공과금과 사용료 요율 책정에 관한 공동부령(2016.7.2.)

- 제060/CAB/MINECN-DD/SA/00/RBM/2016호
- 제095/CAB/MIN/FINANCES/2016호, 제79조~제83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수출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 정부 소관으로 산림벌채권 보유자는 인가된 지역 내에서 벌채 가능한 모든 목재를 현지 가공 또는 수출을 위한 독점권이 인정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록Ⅱ에 포함된 수종인 아프로모시아(Afromosia, *Pericopsis elata*)와 부빙가(Bubinga, *Guibourtia demeusei*)의 수출 시에는 CITES 관리기구(ICCN⁷⁾)에서 교부하는 CITES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정 수종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법령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명령(2000.3.28.)
- 자연보전에 관한 법률(2014.2.11.)제14/003호
- 산림법 제011/2002호

콩고민주공화국은 국내 목재 공급망의 이력 추적을 위하여 산림법의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계획의 자발적협약(VPA/FLEGT)과 유럽의 목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107호, 제108호에 근거하여 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조항과 허가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과 산림 관련 정부부처의 장관들이 채택한 공동부령이 정하는 규격과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여 벌채업자는 사전에 환경·지속가능발전부에 표식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합니다. 벌채업자는 등록된 표식을 사용하여 벌채된 목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7) ICCN:Institute Congolais pour la Conservation de la Nature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2호)

콩고민주공화국이 인정하는 비정부 조직에 의한 인증체계로는 FSC, PEFC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출처 : memberportal.fsc.org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이며 CoC 인증은 0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사항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이며 CoC 인증은 0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사항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콩고민주공화국은 목재 이력추적관리체계인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프로젝트를 2012년~2014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

출처 : www.sgs.com

SGS는 검사·검증·시험·인증 기업이며, 산림 분야에 대한 제3자 인증기관으로 FSC, PEFC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GS에서 제공되는 인증서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sgsgroup.kr/ko-kr/verify-sgs-documents>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3호)

콩고민주공화국은 원활한 산림 거버넌스를 위하여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 계획의 자발적협약(VPA/FLEGT)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은 합법성 검증체계 (SVL, Le Système de Vérification de la Légalité)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출처 : www.euflegt.efi.int/drc

외교부 EU-인도네시아 목재제품에 대한 면허제도 시행에 합의 알림 문서

콩고민주공화국은 2010년 유럽연합과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교역에 관한 실행계획 (FLEGT:Action Plan for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ce and Trade)의 자발적협약(VPA : 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하여 협약 체결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EU FLEGT 자발적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양자협정으로서 자발적 협약 체결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에 대한 자국내 통제, 확인 및 허가시스템(Legality assurance system)을 개발하고, 동 협약이행 체계가 완비된 것으로 EU와 해당국이 공동합의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해당국에서 생산된 목재/목재제품이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임을 인증하는 EU FLEGT 면허를 부여합니다. EU FLEGT 면허를 획득한 수출 목재/목재제품은 EU 목재규정 (EU Timber Regulation 995/2010)을 자동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Teddy Ntendayi
- 소속 : (DANTIC)Direction d'Archives et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s et Communication
- 전화번호 : +243812328443
- e-mail : ntumbabo2007@yahoo.fr
- website : www.medd.gouv.cd/v2